

신구조문대비표

「통계법」

통계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8호, 2024. 3. 26, 일부개정]	통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 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이 지정·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의2. “통계등록부”란 통계청장 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3의2. “통계등록부”란 국가데이터처장 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청장 은 통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정비하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정비하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 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 이 위원장이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① 통계청장 은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로 통계등록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3(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작성기관이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로 통계등록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① 통계청장 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4(총조사의 실시)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청장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통계청장 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생 략)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계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 (생 략)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청장 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통계청장 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작성기관이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통계를 효율적으로 작성·보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 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① 통계청장 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일정·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일정·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통계청장 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자체 통계교육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자체 통계교육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청장 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통계청장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제10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였던 통계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⑤ 통계청장 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데이터처장 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청장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낮아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① 국가데이터처장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낮아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 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② (생 략)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통계청장 은 정기통계품질진단·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정기통계품질진단·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 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통계청장 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국가데이터처장 이 정하는 사항
② 통계청장 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개선 계획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개선 계획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계청장 의 평가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 의 평가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 은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① 통계청장 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 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협력) 통계청장 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협력)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① (생 략)	제14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 통계청장 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거나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등을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건은 통계작성 조직 및 예산, 통계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통계청장 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① 통계청장 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 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 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 의 자료제출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의 자료제출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통계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제19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통계청장 의 승인을 받은 소관 통계가 없게 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로 인하여 더 이상 국가데이터처장 의 승인을 받은 소관 통계가 없게 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통계청장 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 이 인정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 이 인정하는 통계
② 통계청장 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 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 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통계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① 통계청장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① 국가데이터처장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 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계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취소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취소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통계작성의 협의)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 ① 통계청장 은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등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등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통계작성의 요청) ① (생 략)	제21조의2(통계작성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제18조에 따른 통계청장 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 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 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 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표준분류)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 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 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국가데이터처장 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 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취득·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취득·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 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생 략)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청장 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 은 소관 통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청장 은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소관 통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통계청장 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 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원인통계에 관련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원인통계에 관련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통계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동태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동태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①·② (생 략)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계청장 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실지조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 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실지조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 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통계청장 은 통계등록부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구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등록부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구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통계의 공표) ①·② (생 략)	제27조(통계의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통계청장 은 제3항의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3항의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통계청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아니한 통계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국가데이터처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계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통계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① ~ ④ (생 략)	제27조의2(통계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작성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점검한 결과(통계 내용, 공표 예정 일시의 변경 여부 및 변경 시 해당 사유를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통계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작성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점검한 결과(통계 내용, 공표 예정 일시의 변경 여부 및 변경 시 해당 사유를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통계의 보급) ① (생 략)	제28조(통계의 보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청장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 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 (생 략)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지체 없이 통계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청장 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청장 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데이터처장 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③ 통계청장 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 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1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① 통계등록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 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① 통계등록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① 통계청장 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 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통계청장 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 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분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자료제출요구) ① 통계청장 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자료제출요구)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청장 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 의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 통계청장 은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 은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청장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국가데이터처장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 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통계청장 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 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 또는 국가데이터처장 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의한 통계의 작성을 중지한 경우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 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 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 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 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공표하는 경우
제27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 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제7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생략)	9.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점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 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점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12. (생략)	11.12. (현행과 같음)
② 통계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요구의 상대방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요구의 상대방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재발 방지 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재발 방지 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위임 및 위탁) ① (생략)	제37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통계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에게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통계청장 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 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개발·진흥·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제5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계청장 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제29조의3제5항,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이 ,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데이터처장이 ,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